

별첨#1 정관 주요개정내용

현행	변경안	목적
<p>제2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성, 영상, CTI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, 유통 및 유지보수업 2. 정보제공업 3. 정보통신 공사업 4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.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6. 시스템 통합관리, 전산시스템 기획 및 개발업 7. 위 사업과 관련한 유통업 8. 부동산 임대업 9. 위 사업과 관련한 기타 부대사업 	<p>제2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성, 영상 CTI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, 유통 및 유지보수업 2. 정보제공업 3. 정보통신 공사업 4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.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6. 시스템 통합관리, 전산시스템 기획 및 개발업 7. 부동산 임대업 8. <u>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</u> 9. <u>광학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</u> 10. <u>전자제품개발 및 제조 판매</u> 11. <u>의료원료 가공 및 판매</u> 12. <u>생명과학 연구개발 사업</u> 13. <u>생명공학 및 분자의학과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이의 사업화</u> 14. <u>생명과학 물질 또는 제품개발, 제조 및 판매사업</u> 15. <u>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치료제 등의 개발 및 판매사업</u> 16. <u>환경 및 건강 관련 제조 및 판매사업</u> 17. <u>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</u> 18. <u>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</u> 19. <u>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</u> 20. <u>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</u> 	<p>- 사업목적 변경</p>
<p>제19조(전환사채의 발행) 1. 당 회사는 다음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전환사채의 발행) 1. 당 회사는 <u>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,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- 전환사채 발행한도 추가</p>

<p>제20조(신주인수권부사채) 1.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신주인수권부사채) 1.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-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추가</p>
<p>제34조(이사의 수) 당 회사의 이사는 5명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4조(이사의 수) 당 회사의 이사는 8명 이내로 한다.</p>	<p>- 이사의 수 증원</p>